

■ 2019년 7급 국가직 세법 해설자료\_ 김윤경 교수님

문항	정답	해설
1	①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납세고지를 한 국세 2.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3. 원천징수한 국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2	②	① 불복을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불복의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③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④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과 결정기간 둘 다 산입하지 않는다.
3	④	④ 양도담보재산이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4	④	④ 내국법인이 기한 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에 의하여 평가한다.
5	①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6	④	당해세의 경우 피담보채권과 법정기일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 배당 순위 <1순위> 공익비용 15,000,000원 <2순위> 소액임차보증금 및 우선변제임금채권 110,000,000원 <3순위> 당해세(종합부동산세) 20,000,000원 <4순위> 은행 피담보채권 155,000,000원
7	③	③ 국제거래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8	②	②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개별세법 규정에 우선한다.
9	②	①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압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③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교부청구는 가능하나 참가압류는 불가능하다. ④ 다음의 자에 대한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0	①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1	③	③ 과세표준에는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10,000,000원이다.
12	③	총급여 = 36,000,000(봉급) + 2,400,000(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으므로 식사대 전액 과세) + 1,200,000(실비변상적 차량유지비 200,000x12=2,400,000원은 비과세) + 2,400,000(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2,000,000 + 1,000,000 = 45,000,000원
13	②	ㄱ. 벌금 또는 과료는 필요경비불산입 ㄴ. 초과인출금 관련 차입금이자비용 필요경비불산입 ㄷ. 선급비용은 당기의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불산입
14	①	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사항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본다.
15	②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로서 개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즉시 상각의제로 보지 아니한다.
16	③	의제배당액은 50,000,000원(=100,000,000-50,000,000)이고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률 30%이므로 5천만원x30%=15,000,000원 익금불산입한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35,000,000원(=50,000,000-15,000,000)이다.
17	④	④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18	②	② 면세전용(간주공급)에 해당한다.
19	①	①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20	②	②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다.